

#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신홍균\*

##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조약의 해석 및 적용
  - 1. 영토 취득의 금지
  - 2. 사적 소유 금지론
- III.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
  - 1. 우주자원의 개념
  - 2.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
- IV. 미국 우주자원법의 국제 조약상 의의
  - 1. 조약의 자기집행성론
  - 2. 우주조약 위반 쟁점
- V. 결 론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Mail : [sojs@khu.ac.kr](mailto:sojs@khu.ac.kr)

## I. 서론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미국과 구 소련은 수 년간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국내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이 행사되어 2008년도에 공개되었던 기록에 의하면, 구 소련은 우주공간에서 사인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모호한 표현을 채택하는데 두 열강이 합의했다고 한다.

우주조약 제1조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색과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그와 같이 모호한 표현 채택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자국의 영토 보전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주권이 인정된 국가들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주공간을 탐색하라는 규정은 그 내용만으로서도 이미 규범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우주조약 제2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면서,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하다고 보인다. 예컨대, 국가 이외의 기업이나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주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린 부분이 위와 같은 기업의 소유금지여부이다. 지구상 궤도를 넘어서서, 다른 천체 행성으로의 개발 사업에 착수하려면,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 금지 여부라는 불확정성은 투자에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 이후 40여년 동안, 다양한 학설과 해석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불확정성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들의 관행과 학설들은 동 조항에 따라 우주 공간을 소유하는 주권 행사는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에 미국 의회는 우주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하 “우주자원법”이라고 칭함).<sup>1)</sup> 동 법률에 따르면 천체행성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미국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되돌아보면 40여년간에 걸쳐서 우주공간에서의 기

1) 51 U.S. Code Subtitle V - Programs Targeting Commercial Opportunities Chapter 513 - Space Resourc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tilization (§§ 51301 to 51303)

업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온 끝에, 결국 소유권은 미국 법령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국내법에 의한 우주자원의 소유권 인정의 국제법상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1967년 우주조약의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학설과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 국가의 국내 법령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우주조약의 특별한 내용과 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위, 특히 법률상 중요 개념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서, 미국 우주자원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법적 지위 등을 우주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의 규율 체계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주조약의 해석 및 적용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영유(appropriation)를 금지하고 있다. ‘영유’의 개념과 그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왔는 바, 대체로 이는 고전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의 금지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영유’라는 표현에는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의 영토 취득만이 아니라, 국내법상의 소유와 점유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동 조항이 사적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는 학설과 그렇지 않다는 학설간의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 1. 영토 취득의 금지

우주조약 제2조는 달과 천체 행성을 포함한 우주공간에 대한 국가 영유(national appropriation)<sup>2)</sup>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의 방법으로 금지되는 수단을 세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영유’에 대해서 국내법상의 소유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하려는 입장과 국내법상 개념과 단절하고 보려는 입장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점유로 보는 학설, 정당한 권원에 근거한 점유로 보는 학설 등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상의 영유의 개념이 국내법상의 소유의 개념과는 법체계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영유의 개념은 주권에 의한 국가의 영역, 관할권의 행사 영역에 해당 대상을 포함시키는 행위로 본다. 특히, 금지되는 행사 수단에 주권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또한 조문의 표현을 보면, “달과 천체 행성은 ... 국가 영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중속되지 않는다)<sup>3)</sup>

## 2. 사적 소유 금지론

한편, 여하한 다른 수단에 의한 영유 금지가 국가만에 의한 영유만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영유도 금지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우주조약 제2조가 사적소유를 금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양분되어 있다고 보인다.

### (1) 사적 소유권 금지설

대륙법 계통의 학설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그에 따른 관할권이 없이는 사적인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고, 우주 공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sup>4)</sup> 이를

2) 우주조약 제2조는 영문으로는 “national appropriation”, 프랑스어로는 “appropriation nationale”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조약의 경우에 프랑스어로 “appropriation national”이라는 표현을 영문으로는 “national ownership”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프랑스어의 “appropriation”은 영어의 같은 단어보다도 공법이 아닌 사법상의 소유의 개념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학설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일부 학자들은 영어 표현 “appropriation”을 우리 말로는 “전유”라고 해석하려는 입장인 바,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에 본 저자도 동의한다. 다만, 본 저자는, 1967년 우주조약이 국가간 조약임을 감안한다면, “전유”보다는 “영유”(領有)가 조금이나마, 더 타당한 표현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영문 조약은 “not subject to”라고 표현되어 있고, 프랑스어 조약은 “ne peut faire l’objet d’appropriation national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어 표현에 따르면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

4) Henry R. Hertzfeld & Frans G. von der Dunk, *Bringing Space Law into the Commercial*

일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보통법 체제에서도 일원론의 모습이 보기도 한다. 즉 보통법 체제에서, 모든 소유권은 군주, 즉 최고의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학설과 전통이 지속되어 왔다.<sup>5)</sup> 그래서 군주가 권리가 없다면, 일반 시민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없다.

우주 공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원론을 인정하는 학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sup>6)</sup> 우주조약 제2조가 우주공간이 국가의 영토로 취득됨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영토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private law)은 우주공간에 적용될 수가 없다.<sup>7)</sup>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규정하고 공법과 사적인 소유권을 규정하는 사법은 섞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주조약 제2조는 사적인 소유를 금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대표는 UN COPUOS 법률위원회에서 주권을 배제한다는 원칙과 영유를 금지한다는 원칙간에는,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학설도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어로 “appropriation”은 “객체를 소유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라서, “appropriation nationale”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재산”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결국 국가라는 국제법 주체의 관할권, 특히 영토 관할권의 진정한 법적 성격의 문제와 연관되기에 국제법의 오랜 쟁점중의 하나와 연관된다.<sup>8)</sup>

그래서 일부 학설은 “국가 영유”(appropriation nationale)라는 용어가 국가에 의한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주권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면

*World: Property Rights Without Sovereignty*, 6 CHI. J. INT'L L. 81, 81 (2005)

5) Alan Wasser, *Space Settlements,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A Lunar Settlement Claim The Lunar Real Estate It Need*, Journal Of Air Law & Commerce, 2008 p.48 ; Richard Epstein,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Custom and Law as Sources of Property Rights in News*, 78 VA. L. REV. 85, 88 (1992.)

6) Alexander William Salter, *Ordering the Cosmos: Private Law and Celestial Property Right*, 82 J. Air L. & Com. 311, Spring, 2017, p.314

7)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Clunet) 3, 664 (1968), Cestmir Cepelka, Jamie H.C. Gilmour,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uter Space*,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Vol.36, Issue 1, 에서 재인용

8) Marco Marcoff,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Editions universitaires, Fribourg, Suisse 1973, pp.644-645

서,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금지의 범위는 “주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sup>9)</sup>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서는, 주권에 의한 영유의 여부는 사적인 소유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 당시의 국가들의 입장이 중요한 논거로 작용한다. 즉 국제연합에서의 토의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우주조약 제2조가 사적인 소유권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사실이다. UN COPUOS 법사소위원회에서 벨기에 대표는 “주권의 수립만이 아니라 사적인 권리의 형성도 동 조항이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자국의 입장으로 택하며, 그러한 입장은 다른 많은 국가들도 택한 바 있고, 또한 반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sup>10)</sup>

요컨대 이러한 학설은 주권에 의한 영유가 금지되니까 사적인 소유권도 금지된다는 식의 해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권에 의한 영유가 금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인 소유권도 금지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약의 문언적 해석보다는 실제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 (2)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인정론

동 조항은 우주공간에서의 주권 주장은 금지하지만, 일반 국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경우,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를 공해의 지위에 유추하면서, 우주공간은 일반 국제법상의 *res extra commercium*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학설이다.<sup>11)</sup> 일반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로서, 주권의 적용이 배제되면, 법적인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우주조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의 자유는 우주공간이 “*Res extra commercium*”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뒷받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영유금지의 개념을 주권 금지와 함께 도입한 우주조약은 공법과 사법이 나란히 병존하는 혼란을 일으켜서, 전통적인 법 논리가 훼손된다. 한편, 영유금지가

9) 위 Marcoff 전제서

10) U.N. Doc.A/Ac.105/C.2/SR.71, Marcoff 전제서에서 재인용

11) Cestmir Cepelka, Jamie H.C. Gilmour,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uter Space*,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1970, Vol.36, Issue 1

이용의 자유와 함께 나란히 병존하게 하기에, 조약 전체가 모호해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단순한 점유와 우주 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영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즉, 예컨대 개척민 등에 의한 단순한 점유와 주권 국가에 의한 영유), 또한 이용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sup>12)</sup>

우주공간을 “Res extra commercium”으로 본다면, 우주공간에서 천연 자원을 채굴하여 획득할 권리가 국제법상 허용되며, 채굴된 자원에 대한 권리도 인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를 허용하는 국내법을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할 수 있다.<sup>13)</sup>

### (3) 사적소유권 허용설

대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학설은 사적 소유권이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속하는 학설들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동 조항이 사적 소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sup>14)</sup>, 둘째, 우주조약은 그 체계로 볼 때에 국가가 아닌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sup>15)</sup> 셋째, 동 조항은 국가 주권에 의한 영유만을 금지하고 있기에, 예컨대, 미국의 개척민(settlers)들이 행성에 정착한다면, 미국 정부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조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sup>16)</sup> 등이다. 우주조약은 국가간 조약으로서 우주공간의 영유금지(영유금지)는 국가에게 부과되는 금지이지, 국민에게 부과되는 금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금지 문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한 행위이지 국민에 의한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2) La Recherche Spaciale, Le Traite de Spaciale, Vol. VI, No. 2, Fevrier 1967, Capelka 논문에서 재인용

13) Capelka 전계 논문, 38면

14) Joanne Irene Gabrynowicz,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Regime in the Globalization Era*, AD ASTRA, Fall 2005, at 30, available at <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Articles/IntlSpaceTreatyGabryno.pdf>, Alan Wasser 전계 논문에서 재인용

15) Stephen Gorove,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37 *FORDHAM L. REV.* 349, 351 (1969)

16) Glenn Reynolds & Dave Kopel, *The New Frontier: Preparing the Law for Settling on Mars*, *NAT'L REV. ONLINE*, June 4, 2002, <http://www.nationalreview.com/kopel/kopel060402.asp>.

넷째로는 대륙법 계통에서는 소유권은 주권과 관할권이 없어도 인정되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imperium*과 *dominium*를 구분하기 때문이다.<sup>17)</sup> 현대 국제법에서는 로마법상의 *ius publicum*과 *ius privatum*의 구분에 따라서 국가의 주권(*imperium*)과 사인의 소유(*dominium*)이 구분된다고 보기도 한다. 예컨대, 그로티우스는 토지의 점유를 통한 소유권의 원초적 취득은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주권에 따른 관할권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sup>18)</sup> 그로티우스의 이러한 구분론은 네덜란드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의 토지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간주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sup>19)</sup> 또한 그의 구분론에 따르면 공해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상사는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근거가 이 구분론이었다.

본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권 주장에 의한 우주공간의 영유는 금지된다는 데 학설과 관행은 일치하는 반면에, 사적인 소유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Ⅲ.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 1. 우주자원의 개념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

17) [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Articles/research\\_library/WayneWhite98-2.pdf](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Articles/research_library/WayneWhite98-2.pdf)

18)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457 (Richard Tuck ed., 2005) (1625).  
Randall Lesaffer,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1 2005에서 재인용, p.28

19) Randall Lesaffer, 전계 논문, p.44

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sup>20)</sup>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는 “행성에서 그 현장의 자원을 이동시켜서,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영유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고서에서 밝혔다.<sup>21)</sup> 위와 같은 입장이 채택된 배경은 미국 기업이 많은 행성에서 조직적으로 자원을 획득한다는 비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법안은 행성 자원의 개념을 “어떤 단일 행성상 또는 그 안에서 발견된 우주자원”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단일 행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배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행성에서 조직적으로 자원을 획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주자원의 개념도 우주 공간 현장에 있는 무생물 자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자원을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2.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

20) Property Rights. – Any asteroid resources obtained in outer space are the property of the entity that obtained such resources, which shall be entitled to all property rights thereto, consistent with applicable provisions of Federal law and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21) “Removing, taking possession, and using in-situ celestial resources, including in-situ asteroid resources, is not to be construed as an act of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114Th Congress, 1st Session”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114-153”

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2)</sup>

결국 우주자원의 채굴을 의미하는 용어가 최초 법안에서는 획득(obtained)이었는데, 이동(remove)으로 바뀌고 최종 법안에서는 회수(recovery)로 바뀌었다. 최종 법안은 우주자원의 채굴을 “우주자원의 상업적 회수”(commercial recovery of space resources free from harmful interference)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와 같이 자원의 이동이 정당하다는 논거로서 하원 위원회는 미국 국무성의 입장<sup>23)</sup>을 인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에 따라 인정된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는 천체행성 현장에 있는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 점유(possesion), 및 이용(use)을 내용으로 하며, 또한 미국은 우주조약 제1조가 우주공간의 개발(exploitation)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국의 입장임을 견지하여 왔다.

아울러, 미국 국제법학회 회원 교수들이 다음과 같이 의회에 2015년5월15일자 서신을 통해 진술하였다.<sup>24)</sup>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의 발견, 자원의 추출 그리고 자원의 사용의 세 단계로 자원의 이용 단계를 구분한다면, 법안의 § 51301에 규정된 자원은 “추출되지 않은 자원”(unextracted resources)를 말한다.

22) §51303. Asteroid resource and space resource rights

United States citizen engaged in commercial recovery of an asteroid resource or a space resource under this chapter shall be entitled to any asteroid resource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cluding to possess, own, transport, use, and sell the asteroid resource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cluding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23) In a letter dated November 28, 1979, the Secretary of State addressed to Senator Church, Chairman of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24) Congressional Record, May 21, 2015, H 3518)(This letter is signed by Henry R. Hertzfeld, Co-Chair of the American Branch,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search Professor of Space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Adjunct Professor of La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by Matthew Schaefer, Law Alumni Professor of Law, Director—Space, Cyb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Program, University of Nebraska College of Law, Co-Chair, American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Space Law Committee; by James C. Bennett, Consultant, Fort Collins, Colorado, Space Fellow, Economic Policy Centre, London; and by Mark J. Sundahl,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for Administration, Cleveland State University, Cleveland-Marshall College of Law.

둘째, “현장 상태 그대로”(in situ)라는 표현은 우주공간에 있는 자원을 의미할 뿐이다. 우주 자원을 정의함에 있어서 “현장 상태 그대로”(in situ)라는 표현은 우주공간의 천체행성 또는 우주공간의 일부에 대한 주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법안에서 명백히 밝힌 입법 방향은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면서 또한 그에 따르면서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법안은 단지 그러한 자원에 대해서 사인의 권리에 관해 규정할뿐이다. 그러한 자원이 소유권 부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획득”(obtained)이 필요하다. 획득에 대해서는 장래에 사용될 구체적 기술과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고려될 것이다.

넷째, 법안은 천체행성 또는 우주공간의 일부에 대해 여하한 방식으로든지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천체행성상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국가들이 과거에 했던 것과 같다.

다섯째, 1967년 우주조약 제1조는 달과 천체행성은 모든 국가의 탐사와 이용을 위해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고<sup>25)</sup>, 이 조항은 천연자원의 추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요컨대, “현장 상태 그대로의 우주자원”(space resource in situ)을 법안에서 우주자원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천체행성이나 우주자원에 대한 주권적 주장에 이르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법안은 사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할 뿐이라는 것이 진술의 요지이다.

#### IV. 미국 우주자원법의 국제 조약상 의의

국제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현대 국제법 학설은 이원론(Dualism)과 일원론(Monism)에 따라서 각국의 태도를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조약과 국내법은 별개의 법질서라고 보아서, 국제 조약은 국내법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을

25)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12, 228면

통해서 국내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변형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른바 수용(adoptio)을 전제로 하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 조약과 국내법간의 우열관계 또는 대등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함도 인정된다.

일반적인 국제법 학설상, 일원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에 있어서, 조약이 비준되어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득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그 조약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sup>26)</sup> 이를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여부의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판례법에서는 자기집행성 문제를 조약의 해석상 문제로 간주하여 왔다.<sup>27)</sup>

미국 판례법 및 관행상의 자기집행성 문제는 일반 국제법상의 자기 집행성과 다소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 1. 조약의 자기집행성론

미국 연방헌법 제6조 2항은 미국의 권한하에 체결된 또는 체결될 조약은 연방 헌법과 연방법률과 같이 ‘국가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국제적인 약속을 구성하지만, 그 조약이 비자기집행적이어서, 미국 의회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약은 구속력있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sup>29)</sup> 이러

26) 성재호, “미국헌법 제6조2항의 해석과 관행”,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1(1), 2010.2, 97-128, 114면

27) 위 논문 119면

28) U.S. Constitution, Article VI, §2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29)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5 n.2 (2008)

ICJ는 미국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1항 제b호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기소된 멕시코 국민에게 동 협약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통보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국제조약은 국제적인 약속을 구성하지만, 미국 의회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

한 태도를 자기집행성론(self-executing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법과 국제법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사례는 일원론과 이원론의 두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즉, 자기집행성 조약이 비준된다면, 미국 입법부의 별도 입법없이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비자기집행적이라면 입법부가 별도의 입법을 하여야만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sup>30)</sup> 판례에 따르면, 조약 조문이 미국 법원의 직접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해당 조항을 비자기집행적이라고 간주한다.<sup>31)</sup> 또는 미국 상원이 비준 동의과정에서 조문이 비자기집행적이라고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동의한다는 조건을 붙일 때, 법원은 해당 조문을 비자기집행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판례에 기초해서 학설은 조약 조문이 미국 헌법에 따른 의회의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을 비자기집행적 조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32)</sup>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자금의 지출을 요구하는 조약을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고 간주한 적도 있었다.

그와 같이 비자기집행적으로 간주된 조약을 이행하는 법률이 입법될 때까지, 비자기집행적 조항이 다루는 사안을 다루는 기존의 국내법은 계속 유효하다.

또한 미국 법원은 조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 효력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이 서로 독립된 이중 차원이라고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합의는 주권 국가들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구성하고, 국제법상 서로간에 구속력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창설된다. 그렇지만,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조약상 약속을 자신의 국내법체계에 어떻

---

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조약 자체가 자기집행적이어서 그러한 이유로 비준된 조약이 아니라면, 해당 조약은 구속력있는 국내법이 아니다.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의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분쟁시에 ICJ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협정의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
- ICJ 판결을 위반하는 경우에 UN 헌장 제94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타방 당사국이 회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결은 정치적 해결로서, 미 국내 법원에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는다.

30) “Sosa v. Alvarez-Machain, 542 U.S. 692, 735 (2004)”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조약을 비준함에 있어서 동 조약이 비자기집행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무를 창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31)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3-04 (2008)

32) Stephen P. Mulligan,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eir Effect upon U.S. Law”, Legislative Attorney, September 19, 2018

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맥락에서, 조약이 비자기집행적이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통해서만 조약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해당 조약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sup>33)</sup> 그래서, 국내법화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조약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 2. 우주조약 위반 쟁점

### (1) 우주조약 제1조 위반 여부

우주조약의 비준을 위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협상 대표인 Goldberg 주 UN 대사는 동 조약 제1조가 비자기집행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4)</sup> 그는 제1조는 국제법상 구속력있는 규범이 아니며, 추상적인 목표와 의도만을 선언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동 조항은 비자기집행적이라고 첩언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 상원 위원회는 제1조에 대해서 명시적인 유보선언을 한다는 조건부 비준안을 토의했었으나, 이는 부결되고, 그와 같은 해석 선언을 위원회 보고서에 명시한다는 조건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sup>35)</sup> 학설은 이러한 사실상의 묵시적인 유보 선언은 무효라고 보기도 하였다.<sup>36)</sup>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의회는 1967년 우주조약을 비준하였다. 그 이후 미국 의회는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였지만, 우주조약 제1조의 국내법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예컨대,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은 전 인류의 혜택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기여하여야 함을 의회가 선언한다는 조항이 현행 미국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37)</sup>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비

33) Medellín, 552 U.S. at 522-23, “Whether a treaty provision is self-executing concerns how the provision is implemented domestically and does not affect the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o comply with it under international law.”)

34)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U.S. Senate. 90<sup>th</sup> Congress, 1<sup>st</sup> Session, p.12. Ambassador Arthur J. Goldberg, the U.S. representative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COPUOS

35) 위 청문회 속기록 32면

36) Marco Marcoff, 전계 저서, pp.351-352

37) 현행 51 U.S. Code § 20102 -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policy and purpose

(a)Devotion of Space Activities to Peaceful Purposes for Benefit of All Humankind.

행체는 지상에서 탑승 후 외부 문이 닫히고, 다시 지상에서 문이 열려서 하기할 때까지 비행체의 등록국인 미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sup>38)</sup> 1969년7월20일 아폴로 11호에서 분리된 달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여, 미국 승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국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았었다. 같은 해 11월18일, 제91차 회기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항공우주국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그러한 행위는 임무 성공에 따른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적 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주권의 주장에 의해서 국가적 영유의 선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했었다.<sup>39)</sup>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1조는 미국 의회의 별도 입법이 있어야만, 국내법으로서의 효력 여부가 다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된다. 또한, 우주조약을 국내법화하여야 할 의무가 우주조약상 명백히 규정된 바 없으며,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국내법화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국제 조약상 의무의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 (2) 우주조약 제2조 위반 여부

반면에 우주조약 제2조에 대해서는, 자기집행성에 대해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달 표면 탐사가 주권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한 조항이 법령화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동 조항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우주자원법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주 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우주조약 제2조의 성격에 따라서 우주자원법 규정의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첫번째 가정으로서, 우주조약 제2조는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도 금지하고 있는 바, 사적인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동 조항이 자기집행성이므로, 별도의 입법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면, 우주조약 제2조와 우주 자원법은 상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국내법 차원에서는 나중에 제

---

Congress declares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activities in space should be devoted to peaceful purposes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38) 개정전 18. U.S. Code. Section 7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defined

39) 91<sup>st</sup> Cong., H.R.11271, Nov.18, 1969. Public Law 91-119, NASA Authorization Act, 1970

정된 미국 국내법으로서의 우주자원법의 효력이 우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미국의 국제 조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으로서, 우주조약 제2조가 금지하고 있는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에, 사적인 권리에 의한 영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 조항과 우주자원법은 상충관계가 아니므로, 미국의 국제 조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정으로서, 우주조약 제2조가 금지하고 있는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의 해석이 조약 당사국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면, 즉, 미국의 자기집행론 시각에서 볼 때에, 동 조항이 비자기집행성이라면, 우주자원법에서 사적인 권리를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약 당사국으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고유한 입법권의 행사이며, 미국의 조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되었던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 위원회는 “조약은 국가와 다른 국제법인격에게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만, 조약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권리와 의무는 조약 당사국의 국내법이 되어야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적시하고 있다.<sup>40)</sup> 또한, 보고서는 현장에 있는 행성자원을 이동(remove)시키고,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우주탐사와 이용의 자유를 미국 국내법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위에서 살펴 본 첫째 가정, 즉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의 개념에 사적인 권리가 포함되는가의 여부를 다루지 않고 있다. 반면에, 세 번째 가정, 즉 사적인 권리에 대해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주 자원법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자원법에 따라 행성 자원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두 번째 가정을 피하기에, 결국에는 우주자원 획득이 우주조약 제2조의 위반하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 (3) 우주 자원 획득의 적법성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

40) 114Th Congress, 1st Session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114-153, p.7

여될 텐데, 그 획득의 적법성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조항은 우주 자원 획득의 적법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고려될 사항이라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획득 행위가 미국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한다면, 그 자원에 대해서 사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 IV. 결 론

우주조약 제6조에 따라서, 미국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인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그러한 우주활동에 따른 국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41)</sup> 그러나 민간 기업이 천체행성 현장에서 천연자원을 이동(remove)시키는 행위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는다.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달 표면에 착륙하여 운석을 주워서 가져온 것처럼, 땅을 파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돌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동’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것인 만큼, 그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법안의 정당성 논리였다. 우주자원법은 미국민이 그런 식으로 우주자원을 점유(possess)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영유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미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안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천연자원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획득(Obtain)에 이르는 경우는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우주자원의 획득은 미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면서 획득된 우주자원에 대해서 권리가 부여된다는 규정이 우주자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우주자원을 “혹시 발견하면 갖는다”(finder-keeper)에 불

41)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년,6 121면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12, 183면

과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미국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 성재호, “미국헌법 제6조2항의 해석과 관행”,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 [외국문헌]

- Cestmir Cepelka, Jamie H.C. Gilmour,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uter Space*, 36 J. Air L. & Com (1970).
-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Clunet) 3, 664 (1968).
- Richard Epstein,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Custom and Law as Sources of Property Rights in News*, 78 Va. L. Rev. 85, 88 (1992).
- Joanne Irene Gabrynowicz,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Regime in the Globalization Era*, AD ASTRA, Fall 2005, at 30, (available at <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Articles/IntlSpaceTreatyGabryno.pdf>).
- Stephen Gorove,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37 Fordham L. Rev. 349, 351 (1969).
- Henry R. Hertzfeld & Frans G. von der Dunk, *Bringing Space Law into the Commercial World: Property Rights Without Sovereignty*, 6 CHI. J. INT'L L. 81, 81 (2005).
- Randall Lesaffer,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1 (2005).
- Marco Marcoff, *Traite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Fribourg, 1973).

Glenn Reynolds & Dave Kopel, *The New Frontier: Preparing the Law for Settling on Mars*, Nat'L Rev. Online, June 4, 2002.

Alexander William Salter, *Ordering the Cosmos: Private Law and Celestial Property Right*, 82 J. Air L. & Com. 311, (Spring, 2017).

Alan Wasser, *Space Settlements,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A Lunar Settlement Claim The Lunar Real Estate It Need*, 73 J. Air L. & Com (2008).

#### [기타 문헌]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U.S. Senate. 90<sup>th</sup> Congress, 1<sup>st</sup> Session,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eir Effect upon U.S. Law”, Stephen P. Mulligan, Legislative Attorney, September 19, 2018

## 초 록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 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우주자원, 우주조약 제1조, 우주조약 제2조, 우주민간기업, 천체행성

## Abstract

###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Hong-Kyun Shin\*

Space Treaty Article 2 stipulates non-appropriation by sovereignty, and in any other means. Interpretative controversies has continued as regards the meaning of any other means. It is not clear whether appropriation by private entity is also prohibited or not. Furthermore, the controverse around the binding force of Article 1 has made worse the controversy regarding such appropriation.

U.S. Congress has enacted the law regarding the space resouce mining in 2015. Its main purpose is to alleviate legal unstability which U.S, private companies have faced, and it provides some provisions regarding private rights about space resources.

Original bill, H.R. 1508 included the property right. Amendment to the bill is to ensure that an “asteroid resource utilization activity” is inter-preted as on a single asteroid and not on any asteroid.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defining space resources simply means resources in place in outer space; but any such resource within or on an asteroid would need to be “obtained” in order to confer a property right.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merely defining a space resource in the bill is not equivalent to claiming sovereignty or control over celestial bodies or portions of space. Further, there is clear Congressional direction in the bill that the President is only to encourage space resources exploration and utilization, including lowering barriers to such activity, “consistent with” and “in accordance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s.

Federal courts are granted original jurisdiction over entities defined in §

---

\*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51301(4) and in-situ asteroid resource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an asteroid by such entities. Federal courts are not granted jurisdiction over outer space, the Moon, other celestial bodies, or the asteroid from which the in-situ natural resource was removed.

It is said that the Space Resource Utilization Exploration Act of 2015, talked about the rights of private players to own—kind of a “finders keepers” law.

**Key words** : Space Resource, Space Treaty Article 1, Space Treaty Article 2, Space Company, Celestial Corps